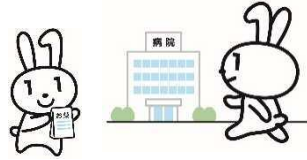


히가시오사카시 국민건강보험 안내

일본은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어떠한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국민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료 보험의 하나인 국민 건강 보험(국보)은 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분



74세 이하로 시구정촌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류 자격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으로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을 하는 자의 일상생활상의 돌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른바 '의료체류비자')
- 체류자격이 '특정활동'으로 1년 미만의 체류로 관광·휴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18세 이상)과 그 분과 동행하는 배우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탈퇴할 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때와 탈퇴할 때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히가시오사카 시청 자격급부과 또는 가까운 행정 서비스 센터에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 타국에서 입국했을 때,
또는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또는 그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잃었을 때
-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 새로 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자격이 허가된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 타국으로 출국할 때
또는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했을 때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때
-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 체류자격이 없어졌을(재류기간이 만료된) 때

○그 외 신고가 필요할 때

- 히가시오사카시내에서 사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
- 세대나 성명이 바뀌었을 때
- 자격확인서나 자격정보공지 등을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기관 등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 등록 수속을 하신 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격 정보 안내를 가입자 1명당 1장 교부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하면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마이넘버카드와 자격정보안내를 모두 제시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격확인서를 가입자 1명당 1장 교부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자격확인서**를 제시하면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 및 자격정보안내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험료란

보험료는 여러분의 의료비를 충당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반드시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가입신고한 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발생한 때부터 부과됩니다. 가입 절차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의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단, 소급할 수 있는 한도 기간은 2년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체납한 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나면 법률에 따라 독촉장을 송부하여 납부를 촉구합니다. 체납한 기간에 따라서는 보험료와 함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요양비의 지급

특별 요양비 지급 대상자가 되면 의료 기관 등의 청구에서 일단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액 요양비, 요양비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등의 압류

독촉장을 송부하고 10일 경과 후 체납이 계속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예금저금, 급여, 부동산 등의 압류를 실시합니다.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법무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체류 기간의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등 대책 강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부 상담에 관하여

의료보험실 보험료과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공휴일 제외) 납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에는 보험료 결정 통지서(납부서)나 마이넘버 카드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평일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오전 9시~12시)도 납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가입·탈퇴·급부에 대하여)

히가시오사카시 시민생활부 의료보험실 자격급부과【시청(본청)2층26번창구】
전화: 06-4309-3167 FAX:06-4309-3804

(보험료·납부에 관하여)

히가시오사카시 시민생활부 의료보험실 보험료과【시청(본청)2층24번창구】
전화: 06-4309-3168 FAX:06-4309-3807